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6

발의연월일: 2021. 9. 27.

발 의 자:신현영·김승원·최종윤

박홍근 • 위성곤 • 김경만

이수진・홍기원・유정주

허종식 · 이용우 · 도종환

이규민 • 황운하 • 민형배

이용빈 · 이광재 · 맹성규

이용호 · 오영환 · 이병훈

정찬민 · 김민석 · 윤준병

윤건영 · 김영배 · 박영순

양이원영 · 강민정 · 천준호

양정숙 · 김진표 의원

(329])

제안이유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아울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나. 국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을 "예방 등을"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을 "감염병연구병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和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연구병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로 한다.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 2.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3.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임상 연구
- 4.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상황에 따른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에 필

요한 자문

- 5.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등의 의료기관 입원·퇴원 현황 파악 및 의료기관 간 전원(轉院) 등의 조정
- 6.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업무조정·지원 및 평가
- 7.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에 대한 관리 평가
- 9. 제8조의6에 따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6(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병원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신종감염병 임상정보 등 연구자원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논의, 자문
 - 2. 신종감염병 관련 연구 논의 및 자문
 - 3. 신종감염병 대응 진료지침 개발 등 정부 정책 자문
 -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를 "감염병연구병원 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감염병원) ① 국가는 제8조의2(감염병원) ①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예방 등을---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 -----감염병연구병원 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 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신 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연 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 사 2.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 훈련 3.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에 대한 임상 연구 4.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상황 에 따른 감염병 대응정책 수 립에 필요한 자문 5.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

등의의료기관입원・퇴원현황파악및의료기관간전원(轉院)등의조정

- 6. 제3항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업무조정・지원 및 평가
- 7.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 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 영
-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등에 대한 관리·평 가
- 9. 제8조의6에 따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u>(3)</u>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u>4</u>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른 감염병연구병원, 중앙감염병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문병원을-----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 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 감염병전문병원을-----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감염병연구병원, 중 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제8조의6(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 원회)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감염병병원에 신종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신종감염병 임상정보 등 연 구자원의 수집 및 활용과 관 련된 논의, 자문
- 2. 신종감염병 관련 연구 논의 <u>및</u> 자문
- 3. 신종감염병 대응 진료지침 개발 등 정부 정책 자문
- 4. 기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종감염병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 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기 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 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	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u>중앙감염병전</u>
	문병원·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제	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
	<u>감염병연구병원 또</u>
	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 권역별
	<u> 감염병전문병원에서</u>
	② ~ ⑤ (현행과 같음)